

# 19세기 말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과 지방반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Gakgukyakjanghappye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Its Distribu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Authorities

유 미 영 (Yu, Mi-Yo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各國約章合編』의 지방반포 |
| 2. 간행경위와 판본정리      | 4.1 지방반포          |
| 2.1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경위 | 4.2 반포목적          |
| 2.2 간행본정리          | 4.3 반포부수와 가격      |
| 3. 『各國約章合編』의 구성체제  | 5. 맺음말            |
| 비교                 | <참고문헌>            |

## < 초 록 >

『각국약장합편』은 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앙관청에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고용 실무서였다. 이 책은 각국과 새롭게 맺은 약조, 장정, 세칙 등을 묶어 놓았는데, 간행 시기에 따라 그 내용에 편집이 가해져 재가공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약장합편』의 간행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행경위를 살펴보고, 그 판본 및 구성체제를 정리·비교하였다. 그 결과 『各國約章合編』은 1887년 편찬되었던 이후 몇 차례 간행과정을 거치면서 기타 다른 조약이 개별적으로 간행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보충하여 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당시에 조약 내용의 추가·변화 혹은 판재 개편에 따라서 그 체제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지방에 반포되는 사례를 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반포목적 및 반포부수와 그 가격을 추정하였다. 반포방식의 경우 처음에는 중앙관청에서 순영에 책을 반포하고 감영에 있는 書寫吏[書色吏]가 순영에 올라가 그 책을 베껴가는 방식이었으나 1888년 5월 신연환자본 『각국약장합편』부터는 일정부수를 감영 이하 지방관아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각국약장합편』은 개항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던 중앙관청에서 그 상황에 맞게 간행한 책이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실제 외교·통상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시비를 가리는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실무자였던 중앙 혹은 지방의 관리는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에 중앙관청에서 『각국약장합편』을 간행 및 반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要語: 『各國約章合編』, 『約章合編』, 지방반포, 반포목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frue2@naver.com)

접수일: 2016년 6월 7일 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Gakgukyakyanghappyeon* (各國約章合編) – a compilation of agreements with different countries – was the official reference book by the central government used to resolve issues when there were diplomatic or trade issues. This book contained a compilation of newly made agreements,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with different nations. It was edited and revised with time as things changed.

This paper described a series of content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Gakgukyakyanghappyeon*. Specifically, it looked at the details of publication, and examined the woodblock-printed book and how it was organized. Furthermore, how this book was distributed to different localities was examined by looking at its contents, and also, the purpose of distribution, the number of copies distributed, and the price of the book were estimated.

With the opening of the country's ports, *Gakgukyakyanghappyeon* was pu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handle this new change. The book was used as the official guide for how to deal with actual diplomatic and trade disputes should they occur. Therefore, working-level official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with the localities ha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ntents of the book. Accordingly, it is deem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ublished and distributed *Gakgukyakyanghappyeon* to help these officials settle these disputes.

Key words: *Gakgukyakyanghappyeon*, *Yakjanghappyeon*, Distribution,  
the purpose of distribution

## 1.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各國約章合編』은 이때 맺은 約條, 章程, 稅則 등을 묶어서 간행했던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문서화되었던 국가 간의 약속이자 일종의 규정이었으므로 중앙관청에서 간행 및 반포되었다. 실제로 그 내용은 외국과 관련된 법률행위·상업행위 등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책과 관련해서 간행배경이나 판본·구성체제 비교, 반포현황 등 서지적 측면에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sup>1)</sup>

본고에서는 『各國約章合編』에 주목하여 책의 간행경위를 분석하고 판본 및 구성체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책이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으로 반포

---

1) 현재까지 『各國約章合編』에 대한 서지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에서 김경록은 『各國約章合編』(古5720-3) 정의, 항목,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관련 판본을 정리하였다. 성보박물관 해제에서는 미상의 저자가 이 책을 판본별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위 사이트 모두 1899년 간행된 『약장합편』에 대한 해제는 없다. 그 밖의 연구분야에서는 『各國約章合編』에 수록된 조약 및 장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여러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김정기, “특집: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이권침탈,” 『역사비평』 통권19호(역사비평사, 1992), 18-32.

김형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개정 과정과 의미(1882-1884),”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노계현, “조일수호조규 및 그 해설,” 『국제법학회논총』 7(대한국제법학회, 1962), 217-223.

박경자, “開港初 對日通商條約上の 關稅問題: 朝日貿易規則과 通商章程을 中心으로,” 『숙대사론』 5(숙명여자대학교, 1970), 109-126.

서명석, “개화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윤소영,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연구』 18(한일관계사학회, 2003), 129-170  
이재석,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조약의 비교분석,”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7(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6), 159-172.

이태명, “開港期 朝日·朝清通商條約에 관한 比較研究,” 『한국전통사학연구』 14(한국전통사학회, 2000), 41-65.

장효홍, “근대조약의 비교를 통해 본 조청관계: 해양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4).

한승훈, “한영조약(1883.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되는 과정이나 반포부수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다. 그 방법은 첫째, 기존에 각 소장기관에 남아있는 간행본<sup>2)</sup>을 정리하여 그 서문 및 목차를 분석하고, 둘째,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록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sup>3)</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各國約章合編』의 간행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간행경위와 판본정리

### 2.1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경위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탈에 가까웠던 통상 요구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에 따른 농민 민란이 지속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미조약’(1882), ‘조영조약’(1883), ‘조독조약’(1883), ‘조이조약’(1884), ‘조프조약’(1886) 등을 체결하였다.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여러 나라가 조선으로

---

2) 본고에서는 간행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살펴볼 간행본은 각각 1887년 전사자본, 1887년 신연활자본, 1890년 전사자본, 1898년 전사자본이다. 표지서명의 경우 1887년 신연활자본, 1890년 전사자본은 『각국약장합편』이고 1898년 전사자본은 『약장합편』이다. 표지서명은 다르지만 『약장합편』과 『각국약장합편』의 간행목적과 활용양상은 『각국약장합편』과 같다. 그 근거는 ① 1887년 서문에 『각국약장합편』이 『약장합편』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록에서 『각국약장합편』과 『약장합편』의 서명이 모두 『각국약장』, 『약장』 등으로 통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모든 소장처에서 서명을 『약장합편』으로 통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에 따라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3) 활용한 자료는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京畿關草』, 『全羅道關草』, 『忠清道關草』, 『平安道關草』, 『咸鏡道關草』, 『江原道關草』, 『江原道來去案』, 『京畿道來去案』, 『慶尙南道來去案』, 『慶尙南道來去案』, 『忠清南道來去』, 『全羅南北來案』, 『平安南道來去案』, 『咸鏡道來去案』, 『黃海道來去案』 등이다.

번잡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설치되어 교섭·통상사무를 관장하였다.<sup>4)</sup>

한편, 조약체결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약속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약조, 세칙, 장정 등이다. 이것을 모아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편찬했던 책이 『各國約章合編』이다. 1887년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각국의 다른 언어와 문자를 정비하여 조약문서로 고쳤는데 그 일이 너무 자세하고, 문자가 번잡스러웠다. 이내 같거나 다른 주를 참고하여 명확하거나 별도로 있는 내용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sup>5)</sup>

1890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增削을 더하여 『각국약장합편』을 간행하였다.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 독관이었던 민종묵의 서문에 따르면 각 조항과 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舊本을 갖추었다. 이에 합편하고 새로 새겨 그 篇帙을 늘려서 『各國約章合編』을 간행하였다.<sup>6)</sup>

1차와 2차에 거친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된 이후에 새롭게 외교 업무를 담당한 外部에서는 1898년에 『約章合編』을 간행하였다. 실제로 당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빈번하게 들어와 교섭 사무가 늘어나고 있었다. 外部에서는 조약을 분명하게 학습해야 업무를 할 때 혼란스러운 일이 없고, 국가 체면이 손상하는 것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해당 관리들이 조약을 익히는 데 힘쓰지 않고 긴요하지 않은 일로 보아서 외국인과의 교류할 때 과실이 생기면 서로 힐책하기 바빴다. 이에 외부에서 비준한 각 조약을 모아서 상·하편 1질로 인출하였다.<sup>7)</sup>

4) 『各國約章合編』 『趙秉式 序文』, 1887년 10월.

“… 自時局一變 權往熙來 以求以均權 猗 我聖上以天縱之姿 因時之宜 逮御極之 十有三年 始通天下 各國東自大和 西暨歐美星 輻聯絡商舶 湊集於是焉 ? 實通署使 掌各國交涉通商事務其任也 …”

5) 『各國約章合編』 『趙秉式 序文』, 1887년 10월.

“… 雖言語文字之不相同 而待之以禮 修之以信 爰訂約書 載在盟府 日約條 日稅則 日章程 其事密 其文繁 乃參攷異同 註以明之彙 以別之哀 成一冊 名之曰 約章合編 …”

6) 『各國約章合編』 『閔種默 序文』, 1890년.

“… 斯編條節 如部分州次 排綴整齊 已備舊本 故因合編 而梓鋟之增其篇帙 廣其曙聞 …”

7) 『京畿道來去案』 1899년 1월 21일 報告書 第1號.

“本部第一號 訓令을 奉准호은즉 內開에 我國이 各國과 締約호은지 十有餘年에 使价聯絡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국약장합편』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맺은 조약·장정·세칙 등을 묶어 간행했던 책이다. 또한, 비준한 조약 가운데 필요에 따라 증삭하였으며 외국인과 교류하는 지역의 관리들이 실무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 2.2 간행본정리

『각국약장합편』은 각국과의 조약 관련 내용을 비롯한 약조, 세칙, 장정 등을 모아 묶은 책으로, 처음 편찬된 날짜는 1887년 10월이고 1887년 이후부터 1890년, 1899년에 간행되었다. 『각국약장합편』의 간행본을 정리하면 모두 네 종류이다.<sup>8)</sup>

각 판본은 1887년 전사자본, 1888년 신연활자본, 1890년 전사자본, 1898년 전사자본이다. 제시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각국약장합편』 1887년 전사자본은 1책으로 표지서명은 『각국약장합편』이다. 四周單邊에 10행 20자이며 무어미이다. 판심 상단에는 본문 제목, 판심 하단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 앞서 1887년 10월 당시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었던 조병식의 서문이 있다.

둘째, 1888년 신연활자본 2권2책으로 표지서명은 『각국약장합편』이다. 四周單邊에 10행 25자이며 무어미이다. 판심 상단에는 본문 제목, 판심 하단에는 張次가 기재되어 있다. 1887년 전사자본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는 조병식의 서문이 있다.

---

호고 商民이 照穰호미 外人이 內地에 遊歷이 較前寔緊호야 交涉事務가 日加時增이라 苟欲善交涉호야 安時宜면 須先講明條約 照然後에 乃可無臨事膠轕이오 亦可免自損國體라 故로 外國은 商旅도 亦解約旨커늘 凡我官吏는 不此之務호고 歸之餘事호야 外人交際에 或有做錯이면 詰責이 紛至호니 言念及此에 殊甚慨歎이라 所以本部에서 彙輯批准各約호야 一帙上下編을 挪款印出호니 交涉關鍵과 通商規程이 昭詳載在호야 一經披閱이면 瞭然自覺이니 此不獨官紳所熟研이오 民商도亦宜諳鍊이라 ….”

- 8) 성보박물관 해제에서는 1892년 『各國約章合編』이 고려대학교도서관과 제주대학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려대본을 실사한 결과 이 책은 1898년에 간행되었던 『約章合編』 下권으로 보인다. 추후 목록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각국약장합편』 연도미상 필사본 1책이 있다. 표지서명은 『各國約章』이다. 無郭에 10행 20자이며 空冊紙에 본문의 내용이 필사되었다. 1887년 10월 조병식의 서문이 있고, 본문에는 『각국약장합편』 2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필사되었다.

한편, 책의 내용을 통해 신연활자본의 인쇄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정황에 따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책은 신연활자본이므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내에서 근대적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곳에서 인쇄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에 있던 동문학에는 박문국이 소속되었으므로 1888년 신연활자본의 인쇄처는 박문국으로 보인다. 기타 중앙관청 내에 근대인쇄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인쇄처를 박문국으로 볼 수 있다.<sup>9)</sup> 또한 『江原道關草』에는 이 책을 1888년 5월에 박문국에서 인쇄하여 通川郡에 반포했던 기록이 있다.<sup>10)</sup>

셋째, 『각국약장합편』 1890년 전사자본이다. 1책으로 금속활자인 전사자에 목활자가 많이 혼입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각국약장합편』이다. 四周單邊에 10행 20자이며 무어미이다. 판심 상단에는 본문 제목, 판심 하단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조병식의 구서문과 1890년 5월에 작성되었던 閱種默의 서문이 있다. 판식은 1887년 전사자본과 거의 같다. 그런데 서문을 제외하고 간행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각 소장기관에서는 민종묵의 서문을 기준으로 1890년 간본으로 보고 있다.

넷째, 『약장합편』 1898년 전사자본으로 上·下 2권2책이다. 1887년과 1890년 전사자본과 마찬가지로 금속활자본으로 전사자에 목활자가 많이 혼입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약장합편』이다. 四周單邊에 10행 20자이며 무어미이다. 판심 상단에는 본문 제목, 판심 하단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기존의 간본에서 수록되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의 서문이 빠졌다. 대신 범례가 있으며 책의 권수에 ‘光武二年(1898)十月日 外部印本’이라는 간기가 있다.

9) 그의 논고에서 『각국약장합편』, 『조아육로통상장정』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편찬하고 박문국에서 인쇄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박찬홍, “근대인쇄출판의 막이 열린다,” 『1894 갑오개혁의 꿈 현대 인쇄출판 특별전』 (청주 고인쇄박물관, 2014), 105.

10) 『江原道關草』 戊子年(1888) 10월 초3일, 해당부분은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도판 1> 『약장합편』 간기(11)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외무아문에 흡수되었고 이후 외무아문은 외부로 개편되었다. 간행 주체가 달라졌지만 외교·통상 업무를 위한 참고 자료로써 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간행되었던 간본과 다르지 않다.

### 3. 『各國約章合編』의 구성체제 비교

2장에서 제시하였던 간행본을 정리하면 『각국약장합편』 1887년 전사자본, 1888년 신연활자본, 『각국약장합편』 1890년 전사자본, 『약장합편』 1898년 전사자본이다. 이 절에서는 각 판본별 체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 古朝31-190-2).

19세기 말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과 지방반포에 대한 고찰

<표 1> 간행본별 체재 비교

(※ 없거나 빠진 부분: X, 이동한 부분: ▷·▶·★, 추가된 부분: 음영)

서명	各國約章合編	各國約章合編	各國約章合編	約章合編
년도	1887년	1888년 5월	1890년	1898년 12월
판본	전사자본	신연활자본	전사자본	전사자본
완질	1책	2권2책	1책	상하 2권2책
책수		제1책	제1책	제1책
간기	X	X	X	光武二年十月日 外部印本
범례	X	X	X	○
서문1	○	○	○	X
서문2	X	X	○	X
총목	X	X	X	第一卷總目
	X	X	X	韓日約章合編
	X	X	X	韓美條約
	X	X	X	各國條約附續通商章程
	X	X	X	第二卷總目
	X	X	X	韓俄陸路通商章程
	X	X	X	朝壤條約
중조약장 합편	X	中朝約章合編目錄	X	X
	X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X	X
	X	中江通商章程條款	X	X
	X	吉林貿易章程	X	X
	X	仁川口華商地界章程	X	X
	X	釜山口華商地界章程	X	X
	X	義州電線合同	X	X
	X	中國代辦朝鮮陸路電線續款合同	X	X
X	中國允讓朝鮮自說釜山至漢城陸路電線合同	X	X	
조일약장 합편	X	朝日約章合編目錄	X	韓日約章合編目錄
	X	修好條規	X	修好條規
	X	修好條規附錄	X	修好條規附錄
	X	朝日人民通商章程	X	朝日人民通商章程
	X	漁探犯罪條規	X	漁探犯罪條規
	X	仁川口日本租界約條	X	仁川口日本租界約條
	X	釜山日租界約條	X	釜山日租界約條

서명	各國約章合編	各國約章合編	各國約章合編	約章合編
조일약장 합편	X	釜山口日本租界內各 國人羈住規則	X	釜山口日本租界內各 國人羈住規則
	X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X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X	日本人朝鮮國間行里 程約條	X	日本人朝鮮國間行里 程約條
	X	X	X	間行里程約條附錄
	X	X	X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
	X	X	X	朝日電報約書 通漁章程
책수		제2책	(제1책 이어짐)	(제1책 이어짐)
조미조약		朝美條約	▷하단에 구성	韓美條約
각국조약	各國條約目錄	各國條約目錄	各國約條目錄	X
	各國條約年表	各國條約年表	各國條約年表	▶1책 권말에 구성
	各國條約同異合編	各國條約同異合編	各國條約同異合編	各國條約同異合編
	各約附屬通商章程	各約附屬通商章程	各約附屬通商章程	各約附屬通商章程
	稅則	稅則	稅則	X
	稅則章程	稅則章程	稅則章程	X
善後續條	善後續條	善後續條	善後續條	
各國租界章程	各國租界章程	各國租界章程	各國租界章程	★2책에 구성 ▶各國條約年表
			▷朝美條約	
책수			(제1책 이어짐)	제2책
조아육로 통상장정	X	X	朝俄陸路通商章程	韓俄陸路通商章程
조오조약		X	X	韓壤條約
				★各國租界章程
				韓日稅則
				各國稅則

위의 표는 ① 『각국약장합편』 1887년 전사자본, ② 『각국약장합편』 1888년 신연활자본, ③ 『각국약장합편』 1890년 전사자본, ④ 『약장합편』 1898년 전사자본을 비교한 것이다(이하 ①, ②, ③, ④로 약칭한다).<sup>12)</sup> 우선 간기와 범례, 총목은 ①, ②, ③에는 없고 ④에만 있다. 서문의 경우 ①과 ②에는 조병식의 서문이 있고, ③에는 조병식과 민종묵의 서문이 있다. 하지만, ④에는 서문이 빠졌다. 이렇

12) ① 규장각본(古 5720-3), ② 국립중앙도서관본(BC 古朝31-190-2), 고려대학교도서관본, ③ 국립중앙도서관본(b1659-5), ④ 국립중앙도서관본(b1659-7)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게 변화가 된 이유는 관제개편으로 간행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리고섭 통상사무아문은 갑오개혁 이후 외부로 변화·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이 책을 간행하면서 기존 서문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④가 간행되었던 1898년은 대한제국 선포 1년 후이므로 우리나라 국호가 바뀌어야 하지만 조약의 경우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sup>13)</sup> 대신 편명만 ‘朝’에서 ‘韓’으로 고쳐서 간행하였다.

한편 여러 나라와 맺은 조약의 경우에도 판본별로 들어가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가별 구성

국가	체결시기	①(1887)	②(1888)	③(1890)	④(1898)
일본	1876	X	○	X	○
중국	1882	X	○	X	X
미국	1882	X	○	○	○
러시아	1884	X	X	○	○
오스트리아	1892	X	X	X	○

간행본별로 보면 ① 『각국약장합편』 1887년 전사자본은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간행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먼저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각국약장합편』 1888년 신연활자본에는 일본·중국·미국과 맺은 조약 내용만 들어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따로 신연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③ 『각국약장합편』 1890년 전사자본의 경우 주요 국가인 일본과 중국 관련 조약은 빠졌다.<sup>14)</sup> 일본·중국의 경우도 따로 합편으로 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약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약장합편』 1898년 전사자본에는 중국을 제외한 일본·미국·러시아·오스트리아와 맺은 조약이

13) 『約章合編』 凡例.

“… 更改我國國號，遵號仍用原文.”

14) 『중일약장합편』(1885, 1896, 1898)과 『중조약장합편』(1887) 그리고 광무개혁 이후에는 『한일약장합편』(1898), 『한청조약』(1898)으로 간행되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간행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기가 따로 없어 각 소장처에서 본문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간행년을 입력했기 때문이며 실제 간행시기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수록되었다. 오스트리아는 1892년에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책에만 수록되었다. 중국의 경우 『한청조약』이 1898년에 따로 간행되었다.<sup>15)</sup> 한편 국가별 조약을 제외하고 ①, ②, ③, ④ 판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각국조약』 항목이다. 다음은 이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각국조약 항목

	항목	비고
각국조약	各國條約年表	
	各國條約同異合編	
	各約附屬通商章程	
	稅則	韓日稅則, 各國稅則으로 변경 및 추가
	稅則章程	
	善後續條	
各國租界章程		

법례에 따르면 영국·독일·러시아·미국·프랑스 각국조약의 뜻에 특별한 異同이 없으면 分門해두지 않고 명명하여 이르기를 각국조약이라고 하고 그 문자가 다른 곳에 따로 주를 써서 밝혔다.<sup>16)</sup> 『각국조약』에는 各國條約年表·各國條約同異合編·各約附屬通商章程·稅則·稅則章程·善後續條·各國租界章程 등의 항목이 있다. 각국조약연표는 각국과 조약을 맺은 날짜와 교섭을 담당 한 관리의 이름을 수록하였다. 각국조약동이합편은 각국조약 가운데 다르고 같은 부분을 따로 수록하였다. 세칙 및 세칙장정은 무역상품에 대한 세칙과 장정을 수록한 것이다. 또한 체결된 조약 외에 별도의 규정을 각국별로 선후속조에 기재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조계장정은 공사관 설치, 외국인 거류 관련 내용을 수록 한 것이다.

15) 판본은 전자자본으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각 소장처에서는 내용을 기준으로 간행년을 1882년으로 보았다.

16) 『約章合編』 凡例.  
“... 一 英德俄美法條約旨意 別無異同 不置分門 命名曰各國條約 其文字差異之處 別行註明以籍攷證 ...”

『各國約章合編』은 1887년 편찬되었던 이후 몇 차례 간행과정을 거치면서 기타 다른 조약이 개별적으로 간행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보충하여 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당시에 조약 내용의 추가·변화 혹은 관제 개편에 따라서 그 체재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의 『조일약장합편』 通漁章程 항목은 1889년 10월에 당시 외무독판이었던 閔種默과 일본대리공사 近藤眞鋤[콘도오]가 체결한 협정으로 일본어선의 어로권에 대한 인정 혹은 불인정 부분을 협정한 것이다.<sup>17)</sup> 1890년에 간행되었던 『각국약장합편』에 『조일약장합편』 항목이 빠졌으므로 이후 1898년에 『약장합편』을 개정·간행하면서 通漁章程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 4. 『各國約章合編』의 지방반포

##### 4.1 지방반포

『각국약장합편』은 실제로 외국인을 접하는 관리가 익혀야 할 책이었다.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중앙관청에서는 이 책을 지방관청에 반포하였다. 반포 방식은 시기에 따라 규모와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각국약장합편』 반포 관련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으로 책을 반포하였지만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각국약장합편』의 경우 반포된 곳 혹은 반포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달라지는 국내 정세를 반영하였으므로 특수한 상황에서 지방에 반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국약장합편』 판본은 모두 4종류이며 각각 1887년 전사자본, 1888년 신연활자본, 1890년 전사자본, 1898년 전사자본이다. 우선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1887년 전사자본은 1888년 1월경에 반포되었다.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17) 『通漁章程』 12개조, 1899년 10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각 도 『관초』에 수록되어 있는 『각국약장합편』 관련 문서<sup>18)</sup>

순번	서명	시기	문서명	발급자	수취자	내용
1	江原道關草	1888.2	牒呈	鐵原府	강원도 관찰사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의 관문에 의해 約章 4권을 베껴 두라는 강원도 도순찰사의 關文이 본월 20일 酉時에 도착하여 관문 뜻에 따라서 거행한다는 내용.
2	江原道關草	1888.2	牒呈	通川郡	강원도 관찰사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강원도순영의 關文에 따라 書寫吏를 순영에 올려보내 各國約章合編 4책을 베껴 오게 하였다는 내용.
4	全羅道關草	1888.1	牒呈	鎭安縣	전라도 관찰사	各國議定現行約條章程 1本을 書吏를 올려보내 베껴 와서 約章에 의거, 거행한다는 내용.
5	全羅道關草	1888.2	牒呈	臨陂縣	전라도 관찰사	約章을 베껴 오기 위해 서리 1명을 巡營門에 올려 보내고 먼저 馳報한다는 내용.
6	全羅道關草	1888.3	牒呈	海南縣	전라도 관찰사	各國議定現行約章을 색리를 정해 베껴오게 하고 먼저 馳報한다는 내용.
7	忠淸道關草	1888.3	牒呈	忠州牧	충청도 관찰사	各國議定約條章程 冊子는 巡營으로 書色吏를 보내어 1本 騰來케 하였으니, 각국인이 국내를 유람하거나 物貨를 가지고 장사할 때는 해당 約章에 비추어 잘못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

위의 표 내용에서 살펴보면 『각국약장합편』은 『約章』, 『各國議定約條章程』, 『各國約章』으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각국약장

18)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京畿關草』, 『全羅道關草』, 『忠淸道關草』, 『平安道關草』, 『咸鏡道關草』, 『江原道關草』, 『慶尙道關草』를 참고하였다.

합편』 4책을 각 도 巡營에 내려보냈고, 지방관아까지 갖추어 두게 하였다.<sup>19)</sup> 그 방법은 지방관아 色吏가 이 책을 베껴두게 하는 것이다. 지방관아에서는 書寫吏(書色吏)를 순영에 올려보내고 『각국약장합편』을 베껴오게 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내용을 정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외국인 이 국내를 유람하거나 物貨를 가지고 상업행위를 할 때 이 책에 비추어 기이함이 없게 하는데 활용되었다.

한편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이 책을 순영으로 내려보냈던 시기는 1888년 1월 이전으로 보인다. 이 책이 1887년 10월에 처음 편찬되었으므로 반포된 시기를 추측하면 1887년 10월~1888년 12월이다.

1888년 5월에는 『각국약장합편』 신연활자본을 지방 감영에 내려보냈다. 이때부터는 관아의 서사리가 책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수를 관아에 배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1) 1888년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보낸 경기도 관찰사에게 보내 關 상고하는 일. ‘올해 5월 11일에 『각국약장』 38권을 인쇄하여 관하 각 고을에 반포하였고 그 약장 인쇄비는 한 질마다 30냥씩을 모두 모아서 올려보내라는 일’의 처분을 받들어서 문서로 보관했던 관문으로 보냈는데 아직 來納하지 않았고, (그 지체하는 것이) 무슨 곡절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관문을 보내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각 고을에 申飭하여 그 약장 값을 낱날이 다 거두어 갖추는 즉시 來納하게 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질차대로 관을 보내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하되, 관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위 관문을 경기 관찰사에게 移關함.<sup>20)</sup>

2) 1888년 10월 초 3일에 통천군수 겸임 준양부의 牒문 전에 到付한 아문의 관과 본도 순영의 관문에 의거하여 저희 군에 내려 보낸 박문국에서 간인한 『約章』 1책의 값 30냥을 作實하여 올려 보내는 일입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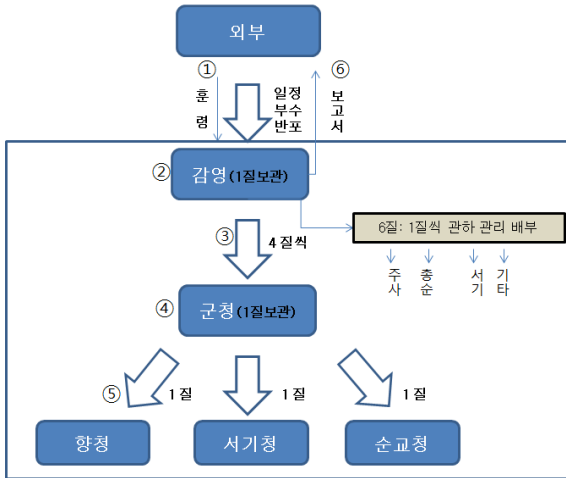
19) 각 도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정리하였다. 또한, 주로 반포되었던 지역은 순영이 있던 곳 혹은 외국인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국경이나 개항장 근처로 볼 수 있다.

20) 『京畿道關草』 戊子(1888) 八月二十八日 關畿營. “相考事. 本年五月十一日 以刷印各國約章三十八帙 頒布管下各邑 該約章刷費 每帙三十兩式 都聚上送事奉承處分 發關在案 尙未來納 未知其間如何曲折 茲以更關 關到付 即便輪飭各邑 該約章價 一一收完 備卽來納 無至生梗之地 宜當者 合行移關 請照驗施行 須至關者 右關京畿觀察使.”

21) 『江原道關草』 戊子(1888) 十月初三日 通川郡兼任 淮陽府報.

위의 인용문을 정리해보면 5월 11일 박문국에서 刊印했던 『각국약장합편』을 관하 각 읍에 냈다. 경기도에는 38질을 반포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몇 질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몇 가지 사례만 남아있으며 지역마다 반포부수가 달랐다. 적어도 38질 이상 반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책값은 감영에서 납부된 금액은 모은 이후 중앙관청으로 보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갑오개혁으로 중앙관계가 개편된 이후 外部에서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업무를 일임하였고 1898년에 『약장합편』을 간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반포과정 및 반포처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 1> 1899년 『약장합편』의 반포과정

“前矣到付衙門關及 本道巡營關文據 該郡下送 博文局刊印 約章一帙 錢價三十兩 作實上送事 題依教捧上向事.”

22) 실제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는 『江原道關草』, 『京畿道關草』, 『平安道關草』, 『咸鏡道關草』이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이다. 관초에서는 각영 각읍에 반포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 전국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용한 강원도, 경기도 지역 외에 평안도의 반포부수도 확인할 수 있는데 1888년 7월 8일 평안도 箕營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매질 30냥씩 1,530냥을 모아 상송했으므로 반포부수는 51질로 볼 수 있다.

외부에서는 비준한 각 조약을 모아서 『약장합편』 상·하 1질을 간행하였다. 책은 외부에서 관찰사가 있는 감영[순영]에 일정 부수를 반포되었다. 외부대신은 반포이유와 함께 인쇄비·우편비용 약간을 별도로 기록하여 지방 감영에 있는 관찰사에게 훈령을 보냈다.

또한 이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섭렵하도록 권고하고 별도로 기록한 공금은 모두 취합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감영에 책이 도착하면 1질은 감영에서 보관하고, 6질은 관찰사 아래 있는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구체적으로 6질은 主事·總巡·書記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7질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관하 각 군에 4질씩 보냈다. 군청에 책이 도착하면 1질은 군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3질은 鄉廳·書記廳·巡校廳에 주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관찰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로 보냈다. 이렇게 중앙관청에서 간행한 책은 지방감영과 그 아래 부속된 관아까지 반포되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책이었던 만큼 책을 받는 독자도 대부분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sup>23)</sup>

그런데 감영에서는 책의 반포에 대해서는 外部의 뜻을 따랐지만, 그 비용을 수취하는 부분에서는 각 도 관부 대부분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 경기도, 전라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등의 지방에서 일정부수와 상관없이 감영: 1질, 감영 관하 관리: 6질, 군청: 1질, 향창: 1질, 서기청: 1질, 군관청: 1질씩 반포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식을 만들었다. 실례는 다음과 같다.

『京畿道來去案』 1899년 1월 21일 報告書 第1號.

“... 此次刊編이 不多호야 姑先以 一百五十九帙로 茲에 送付호며 印刷費와 郵費 若干을 另錄訓令호니 照亮호야 一帙은 貴府에 存留호고 六帙은 府下各官吏의게 量宜分給호고 其餘는 管下各君에 各四帙式 分送호야 一帙은 各該郡廳에 存留호고 三帙은 鄉長·書記·巡校 各處所에 給付存留호야 隨時涉 獵게호고 所有費銀은 照錄收合호야 迅即輸送本郡호야 以充公款케호미 爲可等因이온마 約章合編 一百五十九帙中 本郡各官吏의게 量宜分給호라시온 以其六帙로 主事·總巡·書記의게 各一帙式 派給호으면 三帙이 猶餘이온디 更无派給處호와 來隸處에 還封上送호옵고 一百五十六帙은 依訓辭 分送各府郡 하오며 茲에 報告하오니 查照호시믈 要호. 光武三年一月二十一日

京畿觀察使金永惠

議政府贊政外部大臣朴齊純閣下”

<표 5> 1899년 4월 29일에 외부에서 보낸 훈령

순번	발급자	수취자	훈령 제 11호 번역문
1	議政府 贊政 外部大臣朴齊純	江原道觀察使 趙鍾弼	각국약장을 각 도와 각 군에 나누어 전해여 관리로 하여금 강습하도록 한 것은 見聞을 넓게 열고 일에 임하였을 때 잘못이 없게 하고자 함이오 (인쇄하는데) 쓰였던 돈은 1결에 80전으로 계산하여 거두고 모아서 상송하라고 한 것은 인쇄경비를 보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일찍이 訓飭하였는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아직 내지 않았으니 특히 매우 의혹스럽다. 이에 또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나누어서 신척하여 5월 20일 내에 모두 淸帳하게 하며 훈령이 도착한 形止를 먼저 즉시 馳報하는 것이 좋겠다. <sup>24)</sup>
2		京畿觀察使 金永惠	
3		慶尙北道觀察使 金稷鉉	
4		慶尙南道觀察使 曹始永	
5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6		忠淸北道觀察使署理忠州郡守 金敬圭	
7		平安南道觀察使 閔亨植	
8		咸鏡北道觀察使 李鍾觀	
9		黃海道觀察使 李垠鎔	

위의 표는 1899년 4월 29일에 外部에서 발급한 훈령 제11호와 그 수취자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모두 같은 날 외부에서 발급했으며 책을 받은 거의 모든 감영에서 해당 훈령을 받았다. 각 도에서 모두 4개월이 지나도록 인쇄비를 미납하였다.

24) 규장각에서 수록하고 있는 『江原道來去案』, 『京畿道來去案』, 『慶尙南北道來去案』, 『慶尙南南道來去案』, 『忠淸南北道來去』, 『全羅南北來案』, 『平安南北道來去案』, 『咸鏡道來去案』, 『黃海道來去案』에 수록된 훈령을 참고하였다.

“1899년 4월 29일 훈령제11호.

光武三年四月二十九日

主任 交涉課局長 大臣

協辦各國約章을 各道各郡에 分傳하야 官吏로 講習케 함은 欲開擴見하야 臨事無誤케 함이오 所有費銀을 一帙에 八十錢(葉四兩)으로 計算하야 收聚上送하랴오 함은 印經費를 不容不還充이기로 曾有訓飭이러니 于今四個月에 尙無來納하니 殊甚訝惑이라 茲又訓令하니 到即分飭하야 期於五月二十日內에 畫數淸帳케 하며 訓到形止를 先即馳報爲可 光武三年四月二十九日.”

한편 갑오개혁 이후 서적 반포모습이므로 이전의 통용했던 문서·관리 명칭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반포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에 책을 반포하는 과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 4.2 반포목적

『각국약장합편』이 편찬·간행된 이후 중앙관청에서는 지방관청에 이 책을 반포하였다. 주요 독자층은 중앙·지방 관리였다. 왜 이 책을 읽어야만 했을까? 책 내용이 일반 백성의 생활과 생각보다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일수호규 및 각종 조약이 명문화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의 이권 침탈은 더욱 활발해졌다. 문제는 이권 침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반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중앙관청에서는 관리들이 각국과 맺은 약장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실례를 들어 보면 1895년 平海(현 경북 울진)<sup>25)</sup> 利厚浦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본인이 조선 어민을 상해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외교·통상업무를 담당했던 외부에서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무지한 백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沿邑 수령이 約章의 뜻에 어두워 제대로 曉諭하지 못했기 때문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관찰사가 각 지방에 신칙하여 여러 민들이 약장 내용을 좇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sup>26)</sup>

뿐만 아니라 외부대신 박제순은 관리만 깊게 익힐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상인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sup>27)</sup> 관리를 대상으로 간행했지만, 민간인도

25) 당시에는 강원도 울진군이었으나 현재 경상북도 울진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26) 『江原道關草』 1895년 4월 2일, 외부대신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

“…各地方官, 盡思明晰曉諭, 東沿一帶, 種種此弊, 豈可專責無知之民乎. 苟究其由, 沿邑守令, 全昧約章之意, 不能明白曉諭 ….”

27) 『京畿道來去案』 1899년 1월 21일 報告書 第1號의 내용 중 외부대신 박제순의 훈령 발췌.

“…交涉關鍵과 通商規程이 昭詳載在 憲야 一經披閱이면 瞭然自覺이니 此不獨官紳所熟研이요 民商도 亦宜諳鍊이라 ….”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만큼 당시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에 따른 폐단이 일어났다.

한편, 『각국약장합편』의 내용은 실제 외교·통상문제가 있을 때 그是非를 가리는 기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各國人 遊歷內地 및 採辦出貨시에 교섭 안건을 모두 해당 약장에 비취 거행함.<sup>28)</sup>
- 2) 撤還 過程에서 督逐을 행하여 장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약장 각조를 訓飭하라는 제3호 訓令을 承準함.<sup>29)</sup>
- 3) 熊川 加德浦 어장 문제로 일본 공사가 공문을 보내 約章에 의거 시행할 것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함.<sup>30)</sup>
- 4) 各國約章 제4款에 따라 해당 葬地 내의 결세를 면해달라는 요구.<sup>31)</sup>
- 5) 일본인 2인이 平山南川店鐵路監督所 공문을 갖고 谷山으로 와 500명을 착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관청의 공문을 勒奪했는데 역부모집은 정지하고 공문을 橫奪한 일은 各國約章에 근거해 처리해 달라는 보고.<sup>32)</sup>

위와 같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각국약장합편』의 내용은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약장합편』을 반포했던 이유는 지방관청에서 소장하고 있어야 하거나 관리가 반드시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새롭게 임명된 신임군수가 外部에 직접 와서 『각국약장합편』 일부 내용을 講하는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다.<sup>33)</sup> 지방 군수의 경우 실제 재판을 처리하는 실무자였으므로 더욱

28) 『全羅道關草』 1888년 4월 8일.

29) 『忠淸南北道來去』 1899년 1월 22일.

30) 『宮內府案』 1899년 11월 25일.

31) 『議政府來去案』 1902년 8월 9일.

32) 『黃海道來去案』 1904년 8월 29일.

33) 칙령 제39호 주판입관시험 및 임명규칙, 1898년 12월 8일.

“第二條 地方官은 方內 方外를 勿論하고 行已端正하고 學識 通達하고 衆望에 洽副한 者 中으로서 任命호되 반드시 政府會議를 經호 後에 上奏하고 任命호 後에 各府部에 署經호 時에 現行 章程 規則과 各國 修好條規를 面講 試驗호 事.

第三條 各部에서 守令試驗을 經호 後에 통과 不을 分호야 政府에 通牒호거든 政府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했을 것이다.<sup>34)</sup>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약장합편』의 반포목적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외교·통상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시비를 가리는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군수와 같은 관리 즉, 실무자가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관청에서 『각국약장합편』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반포부수와 가격

조선시대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에 책을 반포하였을 그 부수와 가격이 자세하게 나타나는 기록은 거의 없다. 반면 『각국약장합편』은 반포 부수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각국약장합편』 1질의 가격을 살펴보고, 반포된 부수에 해당하는 비용이 당시 혹은 현재 물가에서 얼마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겠다. 『각국약장합편』의 반포부수를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간행본은 1898년에 간행되었던 전사자본이다(이하 『약장합편』으로 칭한다).<sup>35)</sup> 외부에서는 1898년에 『약장합편』을 간행했는데 이 책이 각 도에 반포된 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36)</sup>

---

會議歸正 訶되 通이 多訶 者는 赴任訶를 許訶고 不이 多訶 者는 上奏 免任케 홀 事.  
光武二年十二月八日  
御押 御璽 奉勅”

- 34) 실제로 신임 江西郡守인 尹性普가 署經차 外部에 와서 各國約章 제3권을 講하는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내용의 通牒이 있다. 『外部來文』 1898년 12월 22일. 通牒106호.  
그 밖에 1898년 12월 말부터 1899년 7월까지 여러 지역의 신임군수가 외부에 와서 시험을 치르고 통과했다는 기록이 있다.
- 35) 이전에 『각국약장합편』 실제 반포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다만 앞서서도 밝혔듯이 매 신연환자본은 매 질당 30냥이었다. 『약장합편』의 가격과 편차가 매우 큰데 이것은 조선 후기 물가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 일본 및 서양의 이권침탈로 인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추후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 36)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江原道來去案』, 『京畿道來去案』, 『慶尙南北道來去案』, 『忠清南北道來去』, 『全羅南北來案』, 『平安南北道來去案』.

<표 6> 각 도별 반포부수

각 도	반포부수[1질 기준]
강원도	111
경기도	159
경상남도	127
전라북도	139
충청남도	155
충청북도	75
평안남도	91

위의 표에 따르면 『약장합편』은 각 도에 최소 75질에서 최대 159질까지 반포되었다. 평균 반포부수를 계산해보면 117질이며, 당시 전국이 13도 체제였으므로 외부에서 1,500부 정도 반포했을 것을 보인다.<sup>37)</sup> 1898년 당시 『약장합편』 책 한 질의 가격은 80錢이었다. 『약장합편』 책 한 질의 값을 당시 중앙관청인 학부에서 간행한 책 한 질의 값과 비교해서 살펴보자.

<표 7> 학부에서 간행한 책과 『약장합편』의 가격 비교<sup>38)</sup>

순번	서명	책수	가격
1	國文小地球圖着色	1첩	4전
2	小地球圖着色	1첩	5전
3	東輿地圖	1첩	8전
4	朝鮮略史	1책	8전
5	地球略論	1책	8전
6	膺蒙彙編	1책	8전
7	小學讀本	1책	10전
8	西禮須知	1책	12전
9	尋常小學권1	1책	14전
10	夙慧記略	1책	14전

37) 『고종실록』 33년 8월 4일조, 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

38) 『公法會通』(1896)·『新訂尋常小學』(1896)·『泰西新史攬要』(1897.6)의 권말에 수록된 정가표를 참조.

19세기 말 『各國約章合編』의 간행과 지방반포에 대한 고찰

순번	서명	책수	가격
11	尋常小學권2	1책	16전
12	尋常小學권3	1책	16전
13	朝鮮地誌	1책	20전
14	國民小學讀本	1책	20전
15	士民必知	漢文1책	32전
16	輿載撮要	1책	40전
17	朝鮮歷史	3책	40전
18	萬國略史	上下2책	40전
19	簡易四則	1책	40전
20	朝鮮歷代史略	漢文3책	50전
21	泰西新史攬要	漢文2책	50전
22	泰西新史攬要	國文2책	50전
23	近易算術	上下2책	80전
24	約章合編	上下2책	80전
25	公法會通	天地人3책	1원

1896에서 1897년 사이에 간행되었던 학부 교과서인 『公法會通』(1896년)·『新訂尋常小學』(1896년)과 『泰西新史攬要』(1897년)의 권말에는 <學部編輯局書籍定價表>가 수록되었다. 당시 학부에서 간행했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약장합편』 1질은 『近易算術』 1질의 가격과 같다. 요금표를 대조한 결과 1896~1897년에 간행되었던 학부간행물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외부에서 『약장합편』을 간행했던 1898년에 학부교과서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경우 이 책의 값은 교과서 대비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80전이 『약장합편』 1질의 값이라면 반포부수에 따른 책값은 얼마 정도일까?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약장합편』 159질을 인쇄하여 1899년 1월에畿營으로 배포하였다. 이 가격을 계산해보면 12,720전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899년에 쌀 한 가마의 값은 4圓<sup>40)</sup>[1圓=100錢, 400전]이었으므로 『약장합편』 159질의 값은

39) 『約章合編』과 『公法會通』의 張數는 각각 上: 78장, 下: 79장 / 『公法會通』 天: 94장, 地: 115장, 人: 92장이다. 같은 중앙관청 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인쇄되는 장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표에 수록된 모든 책의 장수·판본 등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쌀 31.8가마 정도였다.

물론 통계에 따른 가격비교이므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가능해볼 따름이다. 또한, 지방관아에서 그 값을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에서 4개월 이상 미납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개항이후 계속되었던 물가변동으로 감영이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는지, 수세를 회피한 것인지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 5. 맺음말

『각국약장합편』은 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앙관청에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고용 실무서였다. 이 책은 각국과 새롭게 맺은 약조, 장정, 세칙 등을 묶어 놓았는데, 간행 시기에 따라 그 내용에 편집에 가해져 재가공되었다. 특히 장정, 세칙같이 새로운 개념의 약속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나름의 체재로 정리했던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약장합편』의 간행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행경위를 살펴보고, 그 판본 및 구성체재를 정리·비교하였다. 또한, 이 책이 지방에 반포되는 사례를 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반포목적 및 반포부수와 그 가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各國約章合編』은 1887년 편찬되었던 이후 몇 차례 간행과정을 거치면서 기타 다른 조약이 개별적으로 간행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보충하여 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당시에 조약 내용의 추가·변화 혹은 판제 개편에 따라서 그 체재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지방에 반포되는 과정 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반포목적 및 반포부수와 그 가격을 추정하였다. 반포방식의 경우 처음에는 중앙관청에서 순영에 책을 반포하고 감영에 있는 書寫吏[書色吏]가 순영에 올라가 그 책을 베껴가는 방식이었으나 1888년 5월 신연활자본 『각국약장합편』부터는 일정부수

40) 통계청,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통계청, 1994), 89. 1898년 물가 부분을 참고.

를 감영 이하 지방관아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즉, 감영에 일정부수가 반포되면 감영에 1부를 보관하고, 6부는 감영에 있는 하급관리에게 배포되었다. 그 나머지 책은 다시 감영 이하 각 군청에 반포되어 1부씩 보관되었고 나머지 부수는 각각 향청·서기청·군관청에 배포되었다. 위의 반포과정을 통해서 조선 시대에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에 책을 반포하는 과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국약장합편』은 개항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즉면했던 중앙관청에서 그 상황에 맞게 간행한 책이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실제 외교·통상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시비를 가리는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실무자였던 중앙 혹은 지방의 관리는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에 중앙관청에서 『각국약장합편』을 간행 및 반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각국약장합편』과 다른 약장류 서적의 비교·분석 및 각국과 조약체결 이후 약장류 문서를 모아서 서적으로 간행하는 과정 등을 검토하여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원문자료

『各國約章合編』

『江原道關草』

『江原道來去案』

『京畿關草』

『京畿道來去案』

『慶尙南道來去案』

『慶尙南北道來去案』

『公法會通』

『新訂尋常小學』

- 『約章合編』
- 『全羅道關草』
- 『全羅南北來案』
- 『忠淸道關草』
- 『忠淸南北道來去』
- 『泰西新史攬要』
- 『平安南北道來去案』
- 『平安道關草』
- 『咸鏡道關草』
- 『咸鏡道來去案』
- 『黃海道來去案』

## 2. 연구논문 및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영인본). 1980-2014.
- 김정기. “특집: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1882년 조 미수호 통상조약과 이권침탈.” 『역사비평』 통권19호(역사비평사, 1992). 18-32.
- 김형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개정 과정과 의미(1882-1884).”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노계현. “조일수호조규 및 그 해설.” 『국제법학회논총』 7(대한국제법학회, 1962). 217-223.
- 박경자. “開港初 對日通商條約上の 關稅問題: 朝日貿易規則과 通商章程을 中心으로.” 『숙대사론』 5(숙명여자대학교, 1970). 109-126.
- 서명석. “개화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유미영. “개화기 중앙기구 간행물의 인쇄방식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2.
- 윤소영.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학회』

2003). 129-170.

이재석. “초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조약의 비교분석.”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7(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6). 159-172.

이태명. “開港期 朝日・朝淸通商條約에 관한 比較研究.” 『한국전통상학연구』 14(한국전통상학회, 2000). 41-65.

장효홍. “근대조약의 비교를 통해 본 조청관계: 해양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4.

청주고인쇄박물관. 『1894 갑오개혁의 꿈 현대 인쇄출판 특별전』.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4.

통계청.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 통계청, 1994.

한승훈. “한영조약(1883.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3. 참고 웹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